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 I. 일반 사항 및 논문의 체제

1. 이 규정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학회지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비회원이라도 특별기고의 경우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수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이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제는 도서관·정보학 및 관련분야로 한정한다.
4. 투고편수는 단일 명의일 때는 1인당 1편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저자(책임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편까지 투고할 수 있다.
5.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논문 투고자의 연구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투고는 미공간(未公刊) 자료에 한하며, 석사학위논문(학위논문 제출 전후 모두 포함)은 투고할 수 없다.
6. 원고의 분량은 도표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인쇄된 면수 20쪽(A4용지 기준으로 40자 33줄)을 기본량으로 하며,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량을 초과할 때는 저자가 초과 면수에 대한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원고의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원고는 제목, 성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Keyword),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지시형 초록으로 간단하게 작성한다.
9. 원고의 논제, 저자명, 소속기관명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하여야 한다.
10. 원고를 제출할 때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미납 회비, 미납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HWP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논문투고 시스템(liss.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12. 그림에 관한 번호, 제목, 설명문은 그림 하단에, 표에 대한 번호, 제목, 설명문은 표 상단에 명시한다.
13. 그림과 표의 번호는 <그림 1>, <표 1>, 또는 <Fig. 1>, <Tab. 1>과 같이 기입한다.
14. 단위와 고유명사는 원어로 쓰고 수량은 C.G.S. 단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국문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바꾸어 참고문헌 맨 끝에 첨부한다.
16. 논문 투고 전 논문투고시스템(JAMS)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해 논문 표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II. 주(註)의 기술요소와 형식

### <일반 원칙>

- 1) 인용주는 내주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명주는 각주 형태로 표기한다.
- 2) 주는 (저자명 발행년, 인용면) 형태로 표기한다.
- 3) 저자명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제목 발행년, 인용면) 형태로 표기한다.
- 4) 국문 저자명은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서양 인명은 성(surname, family name, last name)만 기재한다.
- 5) 저자명은 3인까지는 모두 기재하고, 4인 이상의 경우 ‘외’나 ‘et al.’ 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1. 저자

- 1) 단일 또는 2~3인 공저  
(김남석 1989)  
(박준식, 이애란 2000)  
(장덕현, 이연옥, 강은영 2014)  
(Adler and Adams 2001)  
(Palmer, Smith, and Creswell 2004)
- 2) 4인 이상 공저  
(오동근 외 2010)  
(Moore et al. 2011)
- 3) 단체명 저자  
(한국도서관협회 2003)  
(U. S. Office of Education 2005)

### 2. 동일 저자의 복합 인용

- (이제환 2005; 2007)  
(David 2003; 2010)

### 3. 동일저자의 동일 발행년

- (변우열 2013a)  
(변우열 2013b)  
(Witty 2011a)  
(Witty 2011b)

### 4. 인용 면수 표기

- (이경호 2004, 203)  
(Carter 2010, 43-46)  
(김중성 2014, 45; 송기호 2013, 48-49)  
(Bonk 2011, 444; Heinich 2009, 89; Bates 2014a, 321-322)

5. 저자 미상 또는 무저자명  
(嶺南 烈女傳 1905)  
(The Mother Goose 1910)
6.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2013)  
(Health Care System Act 1999)
7. 인터뷰 자료  
(양주동 1985)  
(Gordimer 1991)

### Ⅲ.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

#### <일반 원칙>

- 1)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연도. 『서명』. 출판지: 출판사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2)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경전, 사전, 백과사전, 정부간행물 등은 단행본의 기술 형식을 따른다.
- 3) 학술논문이나 기사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호): 게재면수 형식으로 기술한다.
- 4) 국문 단행본 서명이나 연속간행물명은 『』를 이용하여 표기하고, 영문 단행본 서명이나 연속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5) 저자명은 3인까지는 모두 기재하고, 4인 이상의 경우 ‘외’나 ‘et al.’ 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6) 국문 저자명은 완전명(full name)을 모두 기재하고, 서양 저자명은 성(surname; family name; last name),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순으로 기재한다.
- 7) 영문 저자명의 경우 주저자(제 1저자)만 성(surname; family name; last name),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순으로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 저자는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성(surname; family name; last name) 순으로 기재하되, 성 이외의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은 두문자(이니셜)만 기재해도 된다.
- 8) 논문이나 기사의 제목은 국문이나 한문의 경우 그냥 기재하고, 서양 언어의 경우 “ ” 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 1. 단행본

##### 1) 단일 또는 2~3인 공저

오동근. 2001. 『DDC 연구』. 대구: 태일사.

김형오, 노희순. 2011. 『정보탐색과 정보활용』. 서울: 한국정보관리협회.

Edgar, Ronald. 2011. *The Audio Record and Visual Technology*.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Cater, Mary D. and Wallace J. Bonk. 2010. *Traditions of Classificat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 4인 이상 공저

오동근 외. 2010. 『국제표준서지기술법』. 대구: 태일사.

Heinich, R. et al. 1996. *Instructional Media and the New Technology for Learning*. New York: Macmillian.

3) 저자와 편자, 역자

김철현, 안길수 공편. 2014. 『독서치료와 도서관서비스』. 대구: 미래출판.

Jobs, Steve. 2012. 『정보 혁명』. 박민구 옮김. 서울: 태종사.

Kevin, Bacon S. ed. 2011. *Building Library Collection*. New York: Macmillian.

Hong, Gildong. 1996. *The Nature of Public Library*. Translated by Michael S. Stephen and Jake P. Solomon. Chicago: ALA.

4) 저자 미상 또는 무저자명

『嶺南 烈女傳』. 1905. 대구: 嶺南書館.

*The Mother Goose*. 1910. London: New World.

5) 판 표시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 도서관 기준』. 개정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Lee, Jongman. 2014. *The History and Future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3rd ed. New York: Korean Press.

2. 학술지 논문

김정현. 2014.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03-123.

Chinn, Moore. D., Writer K. Fairlie and Bince D. Glen. 2011. "University Librari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3(8): 765-780.

3. 대중잡지, 신문

커피와 바나나의 역설. 2014. 『한겨레』. 6월 21일.

"American Spy Policy Changed." 2013. *Time Magazine*. July 6.

4. 학위논문

변희균. 2014. 『학교도서관 사서의 SNS 활용과 업무성과의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이지석. 2013.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서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Kang, Eungi. 2012. *Current Situat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Ph. D. diss., Indiana University, U. S.

Michael, Scofield F. 2005. *The Images of Public Librarians in 20th Century*. M. A. thesis., Cambridge University, U. K.

5. 학술대회 발표논문

우윤희. 2014. 어린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현황.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술세미나』. 2014년 5월 29-30일. 광주: 전남대학교, 23-45.

Yang, Kiduk and Lokman I. Meho. 2006. "Citation Analysis: A Comparison of Google Scholar, Scopus, and Web of Science." *Proceedings of the 69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3: 185-199.

6. 연구보고서 및 특허자료

한국출판문화진흥원. 2011. 『독서실태와 출판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동연구원, 2011-04.

American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2011. *Predict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School Anxiety in Early Adolesc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0 884.

U. S. Patent No. 5,228,119 (figures 27.6 through 27.11 herein).

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2013. 법률 제116905호.

*Health Care System Act*. 1999. 42 U. S. C. No.9401.

8. 전자문헌

김태성. 2002. 중국사 뒷 이야기. 실천문화사 홈페이지. <[http://www.barobook.com/book/book\\_detail.asp?bok\\_seq=14604&pat](http://www.barobook.com/book/book_detail.asp?bok_seq=14604&pat)> [인용 2005. 3. 24].

김현수. 2006. 가해자와 피해자. 『조선일보』. 2월 4일. <<http://www.choseun.com/editorials/news/200602/200602001345.html>> [인용 2007. 3. 6].

Hirons, Jean W., Regina B. Reynolds and Guenter P. Franzmeier. 2014. *Establishing a Benchmark to Determine Record*. <<http://lcweb.loc.org/acq/conser/corc/>> [cited 2003. 1. 23].

CORC Home Page. <<http://www.oclc.org/oclc/corc/>> [cited 2013. 3. 4].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la.or.kr/>> [인용 2014. 4. 5].

9. 인터뷰 자료

김두홍. 1998. 5. 8, 부산, [인터뷰].

양주동. 1985. 12. 20, [전화인터뷰].

Gordimer, N. 1991, October 10, Boston, [Interview].

1978년 11월 29일 제 정  
1980년 11월 29일 1차개정  
1993년 6월 19일 2차개정  
1999년 2월 11일 3차개정  
1999년 9월 11일 4차개정  
2000년 6월 23일 5차개정  
2003년 3월 7일 6차개정  
2007년 3월 22일 7차개정  
2008년 1월 22일 8차개정  
2008년 11월 28일 9차개정  
2012년 12월 26일 10차개정  
2014년 8월 1일 11차개정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1 조 (목적 및 적용)

이 연구윤리 규정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및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에 관련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우리 학회소속 회원 및 논문투고자로 한다.

### 제2 조 (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및 그 결과의 보고와 발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위조나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6. 우리 학회의 정당한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8.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증거를 우리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는 별도 제보자의 제보나 우리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우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3 조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 ① 우리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 ② 우리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번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와 의무)**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우리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갖춘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심사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에 임해야 하며, 심사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조사)**

- ① 연구결과의 출판이전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우리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내용을 결정한다.
- ② 우리 학회와 관련하여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 6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우리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 등을 포함한 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 ③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8 조 (연구 부정행위 관련당사자에 대한 처리)

- ① 우리 학회의 회원은 우리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우리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정 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④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⑤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⑥ 위원회 위원은 심의 및 조사과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 9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 ① 학회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체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요청 등의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가 요청된 상황에 대해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대상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 1. 심의개요
  - 2. 심의절차
  - 3. 판정내용(필요시 징계 건의사항 포함) 및 그 근거, 관련 증거자료
  - 4. 심의대상회원의 소명내용 및 처리절차
- ⑥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공표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컷 호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3. 발표된 연구결과물의 인정취소 또는 수정요구
  4.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6.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 ⑦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0 조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 ① 우리 학회의 신입회원은 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이사회 의 의결을 통해 이 규정이 발효되는 동시에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우리 학회의 회칙개정 절차에 준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 및 공개 동의서’의 해당란에 투고논문이 이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2007년 11월 24일 제 정

2013년 1월 1일 1차개정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술위원과 편집위원, 이사,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 내용은 외부에 일절 발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절차는 1차심사와 재심사로 구성된다.
  - (1) 1차심사는 투고논문 1편당 3인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 (2) 재심사는 1차심사 또는 재심사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 수행하며, 재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로 판정하며,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5.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정후게재', 혹은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 (1) 논문의 주제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이 부족할 때
  - (2) 논문의 내용에서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전개의 합리성, 문장표현의 명료성, 수록데이터의 정확성, 내용의 완성도가 적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인용문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 (3) 논문의 형식에서 체제, 구성, 분량, 양식 등이 적합하지 않을 때
  - (4)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의 작성기준이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15조)에 위배될 때
  - (5)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심사위원은 원고가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요건(주제, 내용, 형식 등)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7.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8. 심사의견 중 '게재불가'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9.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의견을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간은 심사를 위촉받은 날을 기준으로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로 한다.
10.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1. 논문의 심사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때 '수정후게재'나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서의 사본을 투고자에게 제공한다.
12.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이의의 논리적 근거나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의 수용 또는 기각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3.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에 따른 수정 지시 후 1주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14. 본 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수정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2003년 3월 7일 제 정  
2008년 1월 30일 1차 개정  
2008년 5월 30일 2차 개정  
2010년 12월 30일 3차 개정  
2014년 3월 22일 4차 개정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논문 발행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발행 시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매년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제 3 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4 조 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자출판 형태의 판권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가 소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제 5 조 배포

학술지는 본 회원의 요구 시 무상으로 배포하며, 회원이 아닌 개인,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승인 및 구독료 책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6 조 창간, 증간, 폐간 및 특집호 발행 등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별도의 특집호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내용과 발행 시기 등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4년 3월 22일 제 정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최재황	(경북대학교)
편집위원	강지혜	(동덕여자대학교)
	김지현	(전남대학교)
	김진묵	(강남대학교)
	박옥남	(상명대학교)
	이성신	(경북대학교)
	정영미	(동의대학교)
	조용완	(대구가톨릭대학교)
	M. Krishnamurthy	(인도 ISI, DRTC)
	Misook Heo	(미국 Duquesne University)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50권 제2호

2019년 6월 27일 인쇄

2019년 6월 30일 발행

〈값 30,000원〉

발행: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연락처: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TEL : (051)510-1562, FAX : (051)581-6559

E-mail : liss@naver.com

Homepage : <http://liss.jams.or.kr>

ISSN 2466-2542